

가상자산과 자본시장 선진화

: 세금측면에서의 쟁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정희선 교수

목차

I. 현행 소득세 규정

1. 입법과정
2. 현행 규정
3. 2024년 세법개정안

II. 해외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5. 싱가포르

III. 세법상 쟁점사항 논의

1. 과세논리 및 전제조건
2. 과세범위
3. 소득구분
4. 새로운 사건에 대한 과세: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랍, 하드포크
5. 세액계산: 취득가액, 공제액, 세율,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
6. 납세협력
7. 장기적 과세방향
8. 기타

I. 현행 소득세 규정

1. 입법과정

- 2022.1.1.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도입 (2020.12.29)
- 2023.1.1 이후로 과세유예 (2021.12.8)
- 2025.1.1 이후로 과세유예 (2022.12.31)
- 2027.1.1 이후로 과세유예 (2024.7.25 세법개정안)
 - ✓ 2024.7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과 점검 필요
 - ✓ 2027년부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교환. 과세 인프라 보완 후 시행.

2. 현행 세법규정

• 가상자산의 정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세법 제21조 1항 27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현행 세법규정

• 가상자산의 정의_계속

- 회계상 가상자산의 분류 (가상자산회계처리 감독지침)
 -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취득 목적에 따라 판매목적 (재고자산), 판매목적x (무형자산, 기타자산)
 - 토큰 증권: 투자목적 (금융자산)
- 세무상 회계를 준용하여 무형자산으로 분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질의문답, 2020)
 -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서 무형자산의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참고:
 - ✓ 게임머니,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어음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
 - ✓ 토큰 증권: 금융자산으로 그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 재산권의 압류와 관련된 가상자산은 동산, 유가증권, 채권이 아닌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 (국세징수법 제55조)
- 범죄수익의 몰수대상 여부를 판단하면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판시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2. 현행 세법규정

• 과세소득의 종류, 세액의 계산 및 과세방법_거주자

- 가상자산을 양도(매매, 교환)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세액의 계산

$$\text{가상자산 소득세}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250\text{만원}] \times 20\%$$

- 총수입금액 : 양도·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 :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취득가액: 이동평균법 (신고수리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 시), 선입선출법 (그 외)
- 의제 취득가액 : Max [법 시행일 전 시가, 실제 취득가액]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 과세방법
 -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8)). 단, 원천징수 X.
 - 결정세액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확정신고납부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 예시: 1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의 수익을 냈으면? (1천만원-250만원)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인 165만원의 세금 발생

2. 현행 세법규정

- 과세소득의 범위, 세액의 계산 및 과세방법_비거주자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
 -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 세액의 계산

필요경비가 확인: $\text{Min}[\text{지급금액의 } 10\%, (\text{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text{의 } 20\%]$
필요경비가 미확인: 지급금액의 10%

- 과세방법

- 원천징수 & 분리과세. 단,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2. 현행 세법규정

-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의무**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법 164의4;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4)
 - 제출기한: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두 번째 달 말일
 - 제출서류: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

가 상 자 산 거 래 명 세 서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분기별)

<u>관리번호</u>	
-------------	--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대상기간	년 분기
-------	---------

②가상자산사업자명 (제출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본점소재지)	⑤금융 기관코드	⑥계좌번호	⑦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	----------	----------------	-------------	-------	-----------------------------

가상자산 거래내역

번호	⑥거래자				⑨가상 자산 종류		⑩거래 전 잔고	⑪거래 일자	⑫거래 유형	⑬거래 수량	⑭단가	⑮양도 등		⑯취득 등		⑰거래상대방			⑱거래 후 잔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계정 관리 코드	계좌번호	코드	심볼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자 수정여부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상자산주소
																	소재지	주소		
1																				
2																				

1. ①란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등이 발생한 분기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분기는 1부터 4까지의 숫자 가운데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예시: 2023년 1분기)

2. ②란부터 ⑦란까지에는 「소득세법」 제164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⑤금융기관코드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금융기관코드를 아래 표1을 참조하여 기재하고,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만 가능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결정을 위해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코드를 ⑦기축 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란에 아래 표2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금융기관	농협	신한	케이뱅크	기타
코드	01	02	03	99

가상자산사업자명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코드	001	002	003	004

3. ⑥거래자 : 가상자산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기타 취득한 자의 인적사항, 계정관리코드(예시: 동일인의 계정이 2개인 경우 '001', '002'), 금융기관코드(위 표 참조),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⑨가상자산 종류 :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00145', 표 안에 없는 경우 '999999')

5. ⑩거래 전 잔고 :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등의 거래가 발생하기 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를 적습니다.

6. ⑪거래일자 :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23년 3월 1일 → 20230301)

7. ⑫거래유형 : 가상자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 가상자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 교환으로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교환양도'; 교환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교환취득'; 가상자산 대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여', 다른 지갑주소로 이전하여 인출되는 경우 '이전', 외부에서 가상자산이 예입된 경우 '인입', 기타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기타'로 구분하며,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⑫거래유형별 ⑮양도 등, ⑯취득 등, ⑰거래상대방은 아래 작성방법 참조[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금액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코드	유형	거래유형	⑮양도 등	⑯취득 등	⑰거래상대방
01	매도	가상자산 매도(가상자산A→원화)	가상자산A의 매도가액과 매도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를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빈칸
02	매수	가상자산 매수(원화→가상자산A)	빈칸	가상자산A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03	교환양도	가상자산 교환(가상자산A→가상자산B)	가상자산A의 교환가액과 교환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를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빈칸
04	교환취득	가상자산 교환(가상자산A→가상자산B)	빈칸	가상자산B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05	대여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대가 수령 (대여 예시: 예치서비스 등)	가상자산 대여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와 발생하는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대여소득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06	이전	다른 가상자산주소(지갑주소)로 이전	빈칸	이전 시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적습니다	가상자산 수취인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 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07	인입	외부에서 가상자산 예입	빈칸	인입된 가상자산의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가상자산 송신인의 인적사항과 인출된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99	기타	기타 가상자산 취득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빈칸	가상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8. ⑬거래수량 : 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최소 거래단위 까지 적습니다.(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0)

9. ⑭단가 : 매도, 매수, 교환양도, 교환취득, 대여, 기타 취득 시 거래시점의 단가를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

10. ⑮양도 등 : 거래유형이 매도, 교환양도, 대여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11. ⑯취득 등 : 거래유형이 매도, 매수, 교환양도, 교환취득, 이전, 인입, 기타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거래자수정여부 : 거래자가 장외(개인간거래, 해외거래소 등)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인입하여 취득가액을 직접 입력한 경우 Y, 그 외에는 N을 적습니다.

12. ⑰거래상대방 :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대여, 이전, 인입, 기타의 경우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가 상 자 산 거 래 집 계 표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연간)

<u>관리번호</u>			① 대상 연도	년
* <u>관리번호는 기입하지</u> 마십시오.				
② <u>가상자산사업지명</u> (제출의무자)	③ <u>사업자등록번호</u>	④ <u>주 소</u> (본점소재지)	⑤ <u>금융기관</u> 코드	⑥ <u>계좌번호</u>
⑦ <u>기초가상자산</u>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가상자산 거래내역

일련 번호	⑧ <u>거래자</u>				⑨ <u>기타소득금액</u>						⑭ <u>연간 변동내용(수량)</u>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계정 관리 코드	계좌번호	⑩ <u>가상자산</u> 종류		⑪ <u>양도 등 거래내용</u>			⑫ <u>취득 등 거래내용</u>		⑬ <u>기타</u> 소득금액	⑮ <u>기초</u> 재고	⑯ <u>증가</u>	⑰ <u>감소</u>	⑱ <u>기말</u> 재고	
					코드	심볼	수량	가액	수수료	가액	수수료						
1																	
2																	

3. ⑧ 거래자 : 대상연도 중 가상자산의 양도 등(매매, 교환, 대여) 거래가 발생한 자의 인적사항, 계정관리코드(예시: 동일인의 계정이 2개인 경우 '001', '002'), 금융기관코드(위 표 참조),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⑨ 기타소득금액 : 인별 연간 기타소득금액[총 수입금액(양도·대여 등 가액) - 총 필요경비(취득가액, 수수료 등)]을 계산하기 위해 적습니다.
5. ⑩ 가상자산 종류 :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00145', 표 안에 없는 경우 '999999')
6. ⑪ 양도 등 거래내용 : 인별, 가상자산별 연간 양도 등(매매, 교환, 대여) 거래 총 수량(최소 거래단위 까지의 합계액 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0), 총 가액, 총 수수료를 적습니다.
7. ⑫ 취득 등 거래내용 : ⑪번 항목에 기재한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수수료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⑬ 기타소득금액 : ⑪번 항목의 가액에서 ⑫번 항목의 가액과 ⑪번, ⑫번 항목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⑭ 연간 변동내역 : 대상연도 1년간 인별, 가상자산별 변동된 수량을 적습니다. [연간 변동내역 : ⑮기초재고 + ⑯증가 - ⑰감소 = ⑱기말재고]
10. ⑮ 기초재고 : 대상연도 1.1. 0시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최소 거래단위 까지의 합계액 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0)을 적습니다.
11. ⑯ 증가 : 대상연도 중 가상자산 매수, 교환취득, 대여, 인입, 기타 취득 등의 사유로 증가한 총 수량을 적습니다.
12. ⑰ 감소 : 대상연도 중 가상자산 매도, 교환양도, 이전 등의 사유로 감소한 총 수량을 적습니다.
13. ⑱ 기말재고 : 대상연도 12.31. 24시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최소 거래단위 까지의 합계액 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0)을 적습니다.

2. 현행 세법규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국조법 제52조 제2호)**
 - 신고대상자: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의 어느 하루 잔액 (해외금융계좌가 여럿인 경우 합산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신고의무:
 - 다음 연도 6월 중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022.1.1부터 시행.

(*) 해외금융계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국조법 제52조 제2호 라목)

(**) 스스로 생성한 개인지갑은 해외금융계좌가 아님

참고

※ 과세인프라 확보 위한 보완사항 (2024년 세법개정안)

-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소득법·령, 법인법·령, 관세법·령)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거래내역(체납자 한정) 추가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과세자료(현 69개 자료)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 OECD 다자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 목적: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
 - 내용: 가입국간 비거주자·외국법인 고객의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 (보고 대상 거래의 총 지급액 및 거래 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
 - 암호화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 토큰형 증권
 - 2027년부터 교환 예정으로 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
 - 관련 가입국 간 해당 정보를 매년 교환

참고

CARF에서 요구하는 정보 수준

- a) 각 보고 대상 사용자의 이름, 주소, 거주 관할권, TIN(납세자 식별 번호), 생년월일 및 출생지(개인의 경우), 법인의 이름, 주소, 거주 관할권 및 TIN, 그리고 보고 대상자인 각 지배인의 이름, 주소, 거주 관할권, TIN, 생년월일 및 출생지, 그리고 각 보고 대상자가 법인의 지배인으로서의 역할
- b)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식별 번호(있는 경우)
- c)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거래를 수행한 각 관련 암호자산 유형에 대해:
 - i) 관련 암호자산 유형의 전체 이름;
 - ii) 법정 화폐에 대한 취득과 관련된 총 지급 금액, 총 단위 수 및 관련 거래 수;
 - iii) 법정 화폐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총 수령 금액, 총 단위 수 및 관련 거래 수;
 - iv) 다른 관련 암호자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된 총 공정 시장 가치, 총 단위 수 및 관련 거래 수;
 - v) 다른 관련 암호자산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총 공정 시장 가치, 총 단위 수 및 관련 거래 수;
 - vi) 보고 대상 소매 결제 거래와 관련된 총 공정 시장 가치, 총 단위 수 및 관련 거래 수;
 - vii) 보고하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 있는 전송 유형으로 세분화된, c)(ii) 및 (iv)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보고 대상 사용자에 대한 전송과 관련된 총 공정 시장 가치, 총 단위 수 및 관련 거래 수;
 - viii) 보고하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 있는 전송 유형으로 세분화된, c)(iii), (v) 및 (vi)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보고 대상 사용자의 전송과 관련된 총 공정 시장 가치, 총 단위 수 및 관련 거래 수;
 - ix) 보고하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금융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지 못하는 지갑 주소로의 보고 대상 사용자의 전송과 관련된 총 공정 시장 가치 및 총 단위 수.

II. 해외사례

1. 미국

- 조세법상 가상자산: 화폐가 아닌 자산(property)으로 분류. 자본이득세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
- 양도 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 양도: 매도, 교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대가로 사용. 지갑간 이동은 과세 안함
 - 주식에 대한 과세방식과 동일. 자본이득으로 분류과세
 - 단기 자본이득(1년 미만 보유): 경상소득으로 종합과세. 10% ~ 37%의 누진세율 (7개 과세구간)
 - 장기 자본이득(1년 이상 보유): 분류과세. 0%, 15% 20%. (3개 과세구간)
 - 자본이득 = 처분시 공정가치 - [취득가액 (개별법, FIFO, HIFO, 평균법 등. LIFO인정x) + 부대비용]
 - 공제액: 총자본이득(가상자산 포함)에 대해 44,625\$ (단독 또는 부부별도 신고 시)
- 기타 사건에 대한 과세
 - 채굴,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랍, 하드포크: 수령시점에 공정가치에 대해 경상소득으로 과세
- 증여
 - 증여시점에 과세x. 추후 처분시점에 과세. 보유기간 계산 시 증여자의 보유기간 포함.
 - ✓ 처분시점에 자본이득 발생: 취득가액 = 증여자의 취득가액
 - ✓ 처분시점에 자본손실 발생: 취득가액 = Min[증여자의 취득가액, 수증시점의 공정가액]
- 손익 통산 가능. 또한, 총자본손실은 \$3,000까지 경상소득에서 공제 가능.
- 결혼금은 기한제한 없이 이월공제 가능

1. 미국

(*) 채굴보상

- 취미 채굴자: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 채굴 사업자: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 채굴 비용 공제 가능
 - 사업과 취미의 판정기준으로 미국법원은 ①사업운영방식 ②전문성 ③투자시간과노력 ④관련 자산의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 ⑤유사활동에서의 성공여부 ⑥과거의 손익기록 ⑦지속적인 수익창출 여부 ⑧납세자의 재정상황 ⑨취미나 오락목적 유무라는 9가지요소를 제시
 - Hobby Loss Rule (IRC 18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취미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의 공제는 인정하지 않음. 설령 비용을 인정하더라도 그 활동의 수입액을 한도로만 공제가 가능
- 추후 처분 시 자본이득세 과세. 수령시점의 공정시장가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

2. 영국

- 조세법상 가상자산: 화폐가 아닌 자본자산(capital asset)으로 분류. 주식과 유사하게 취급
- 양도 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 양도: 매도, 교환, 증여, 결제 시 사용
 - ✓ 가상자산 증여 시(배우자 증여 제외)에도 수증자에게 자본이득세 과세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로 분류과세
 - 관련 비용(예: 최초 취득가액, 거래비용, 전문가 비용) 공제
 - 공제액: £3,000 (£12,300 → £6,000 (2003~2004) → £3,000으로 인하 (2004~2005년부터))
 - 세율: 10%, 20% (20%는 과세소득이 £50,270을 초과 시, 소득세 고세율 납세자)
- 기타 사건에 대한 과세
 - 채굴, 에어드랍, 스테이킹, 디파이 보상: 소득세(Income Tax) 과세.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채굴 관련 비용: 일반적으로 공제X
 - 세율: £12,570 공제 후 20%~45%까지 누진세율
- 손익 통산 가능. 결손금 이월공제 4년.

2. 영국

- 세원포착 방법
 - ✓ 과세관청(HMRC)은 모든 영국 거래소와 데이터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
 - ✓ HMRC는 2014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 보유
 - ✓ HMRC는 영국 거래소나 지갑에 가입할 때 제공한 KYC(고객 신원 확인) 정보를 보유

참고:

- HMRC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미납된 암호화폐 관련 세금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
- 목적: 영국이 CARF 규정의 일환으로 유럽 국가들과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함에 따라 미신고 수익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제시
- 주요 내용: HMRC는 투자자들이 암호화 자산에 대한 미납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 HMRC와 연락하지 않는 투자자는 추가 이자와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밝힘
- 미신고 수익에 대한 조사는 신의칙 및 고의성에 따라 결정
 - ✓ 암호화폐 세금 신고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나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난 4년간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 암호화폐 수익을 신고하는 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최대 6년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 ✓ 암호화폐 수익이나 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을 고의로 오도하고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았다면, 최대 20년간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3. 일본

- 조세법상 가상자산: 암호화폐는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
- 양도 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 양도: 암호화폐를 JPY와 같은 법정 화폐로 판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여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로 교환. 암호화폐로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
 - 기타소득으로 과세
 - 과제제외: 구매, 보유, 지갑간 이동, 증여는 과세되지 않음
- 기타 사건에 대한 과세
 -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렌딩: 취득시점 공정가치로 과세. 관련비용 공제 가능.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
 - 하드포크: 수령시점에 과세x.
- 공제액: 200,000 JPY
- 세율: 15% ~55% (지방소득세 10% 포함). (*) 비교: 주식양도차익 세율은 20%
-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불가. 이월공제도 불가.
- 비거주자에게는 20% 단일세율 적용
- 암호화폐에 대한 중과세로 소득세 과소신고 가능성 높음. 일본 과세관청은 이에 관련 세무조사 확대: 2019년 개인 50명, 법인 30개의 과소신고 포착
 - 참고: 2021년 가상자산 관련 조세포탈로 1년형 및 2200만 엔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첫 사례

3. 일본 _참고

일본 최대 규모의 웹3.0 콘퍼런스 '웹X(WebX)'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 타워 호텔에서 개최

일본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산하 웹3.0 프로젝트팀(PT)은 지난해 웹3.0 백서를 발간하며 웹3.0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발간한 웹3.0 백서의 세제 개정 부분은 토큰을 이용한 펀드레이징 활성화와 개인 납세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백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펀드레이징을 위해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라면 시장가치가 아닌 취득원가로 반영해 과세한다. 개인 과세는 기존 세율 55%에서 20%로 낮추고 분리 과세 및 손실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투데이, 2024.9.13, 윤희성 기자)

4. 독일

- 조세법상 가상자산: 가상자산을 '기타 경제재(Andere Wirtschaftsgüter) 간주
 - 수집품(예: 미술품, 와인, 금 등)이나 개인 소유물품과 유사 성격
 - 자본이득세 대신 보통소득으로 과세
- 양도 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 양도: 가상자산의 처분, 교환, 결제수단으로 사용
 - 1년 이상 보유 장기 자본이득: 비과세
 - 1년 미만 단기 자본이득: 보통소득으로 과세. 단, 600€ 미만은 비과세
 - 0~45%까지 누진세율 + 5.5% 연대세(solidarity tax) 과세
- 기타 사건에 대한 과세
 - 256€ 미만은 비과세
 - 채굴소득: (취득일의 공정가치 - 채굴비용)에 대해 보통소득으로 과세.
 - 스테이킹 및 렌딩: 보통소득으로 과세
 - 에어드랍: 특정 활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면 수령 시점에 과세X.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0유로.
 - 추후 양도 시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또는 보통소득 과세 규정 적용.
-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5. 싱가포르

- 조세법상 가상자산: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은 무형자산으로 간주
- 양도 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 자산(가상자산 포함)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없음
 - 보유기간, 거래의 빈도, 거래의 목적에 따라 구분과세
 - 투자목적의 장기 자본이득: 과세면제
 - 투자목적의 단기 및 빈번한 거래, 또는 사업목적의 자본이득: 사업소득으로 과세
- 기타 사건에 대한 과세
 - 채굴
 - 취미 채굴자: 과세하지 않음. 따라서 채굴비용도 공제하지 않음
 - 채굴 사업자: 사업소득으로 과세
 - 스테이킹 및 렌딩: 연간 SGD 300 미만 비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 자진신고 납부
 - 에어드랍 및 하드포크: 과세x.
- 세율: 0%~24%의 누진세율 구조

참고

-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 비과세 국가**

- Belarus, Bermuda,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El Salvador, Georgia, Germany, Hong Kong, Malaysia, Malta, Puerto Rico, Singapore, Slovenia, Switzerland, The United Arab Emirates

(*) 붉은 색 표시: Fair Tax Foundation의 2023년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속한 국가

III. 세법상 쟁점사항 논의

1. 과세논리 및 전제조건

- 조세형평 및 중립성 측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
 - 소득을 담세력으로 하는 소득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어야.
 -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차별하는 경우 공평성 훼손 이슈
 - 경제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지 않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간섭을 최소화 하는 세제가 바람직
 - 자산 별 차별과세는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쳐 자원배분 왜곡 초래 가능
- 시장안정성 및 국제 경쟁력 측면 고려사항
 -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미성숙 단계 (이용자보호법 올해 첫 실시 등)
 - 과세 도입 시 세원포착이 어려운 개인간 거래, 역외거래 가능성 증가, 지하경제 확대 우려
 - 비과세 국가(예: 싱가포르, 홍콩, 독일 등)로 투자 및 소득 이전 가능, 고소득자의 국적이탈 가능성
 - 국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 비과세 국가는 주로 조세피난처로 비과세 방향은 적절치 않음
 - 해외 사례의 장점 참고할 필요
 - ✓ 비과세국가로 분류된 독일과 싱가포르: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 반면, 단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
 - ✓ 미국 역시 자본이득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 저율과세 혜택 제공
 - 장기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혜택(예: 경감세율) 도입으로 투자이탈 방지 및 장기투자 장려

1. 과세논리 및 전제조건 _계속

- 가상자산소득 과세 전제조건
 - 투자자 보호 관련 안정적인 법체계 정비
 - 2024.7.19부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단,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제한적 법률.
 - 이용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 & 2단계 입법까지 규제공백을 우려하여 1.5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
 - 세원 포착을 위한 과세 인프라 정비
 -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CARF 참여국 (54개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간 교환된 정보를 통해 세원 포착 가능할 것으로 기대
 - 2024년 세법개정안의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및 CARF 이행을 위한 법적체계 마련 등의 체계 정비 등 후속조치 병행되어야
 - 단, 개인간 거래, CARF 비참여국(예: 홍콩)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이 여전히 어려운 이슈가 남아 있음

참고

(*) CARF 54개 참여국가

Armenia; Australia; Austria; Barbados; Belgium; Belize; Bermuda; Brazil; Bulgaria; Canada; Cayman Islands; Chile; Columb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aroe Islands; France; Germany; Gibraltar; Greece; Guernsey; Hungary; Iceland; Indonesia; Ireland; Isle of Man; Italy; Japan; Jersey; Korea; Liechtenstein; Luxembourg; Lithuania; Malta; Mauritius; Mexico; Monaco; Netherlands; Norway; Portugal; Romani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2. 과세범위

- **현행규정**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양도는 매도 및 교환을 포함
- **해외사례**
 -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매도, 교환 뿐 아니라 재화 및 용역의 구매 대가로 지급한 경우 포함
- **쟁점사항**
 -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
 - 가상자산 양도 후 재화 및 용역 취득 vs 재화 및 용역 취득 시 가상자산으로 직접 결제 간 과세형평 이슈
 - 결제를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 시 매도 대신 결제를 택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 가능
 - 일정금액 이상의 소매결제를 과세범위에 포함하는 방법. 납세협력비용, 세무행정상 집행가능성도 고려해야.
 - 미국은 가상자산 결제로 발생하는 소득 중 \$200 이하까지 비과세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201)
 - 가상자산거래명세서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매 결제 내역 역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 CARF에서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소매 결제 거래 관련 총 공정시장 가치, 총 단위 수 및 관련 거래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3. 소득구분

- **현행 규정**

- 양도와 대여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
 - ✓ 세법상 가상자산은 무형자산. 그 양도 및 대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 ✓ 비교: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는 이자소득으로 분류

- **해외 사례**

-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구분하여 과세
 - ✓ 미국: 장기 자본이득 (분류과세), 단기 자본이득 및 렌딩 대가 (종합과세)
 - ✓ 영국: 자본이득 (분류과세), 렌딩 대가 (종합과세)
 - ✓ 일본: 가상자산 소득 구분 X (종합과세)
 - ✓ 독일: 장기 자본이득 (비과세), 단기 자본이득 및 렌딩 대가 (종합과세)
 - ✓ 싱가포르: 장기 자본이득 (비과세), 렌딩 대가 (종합과세)

- **쟁점사항**

- 양도 및 대여의 기타소득 구분이 세법체계 및 세제운영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 필요
 - (1) 양도차익: 자본이득, 비경상적 성격, 장기간에 걸쳐 결집효과 발생
 - ✓ 방안1)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 ✓ 방안2)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
 - 가상자산은 그 성격상 금융자산에 가까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기관에 해당
 - (2) 대여소득: 이자성격, 단,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아님.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4. 새로운 사건에 대한 과세 _채굴

- 채굴 보상(Mining Reward)
 -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가 그 연산작업에 참여하여 네트워크 거래의 검증자 역할을 수행. 이를 증명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수취
- 현행 과세규정
 - 구체적인 명시 없음. 단,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가능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 해외사례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사업성이 없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싱가포르: 사업성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 캐나다: 수령시점에 과세X. 처분시점에 과세.
- 쟁점사항
 - 채굴대가의 과세여부, 과세시기, 소득구분, 관련비용 공제 여부, 추후 처분 시 취득원가를 명확히 제시하여 납세자들의 투자활동에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높여야
 - 과세여부: 용역수행 대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어야 함. 단,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과세방안
 - 사업성(영리목적성, 독립성 및 계속·반복성)이 있는 경우
 - 수령시점에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가 및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명확히 제시.
 - 사업성이 없는 경우
 - 납세협력비용 및 집행비용이 더 클 수 있음
 - 수령시점 과세 대신 추후 양도시점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이 때 취득원가는 0으로 하고 기타 필요경비 공제.

4. 새로운 사건에 대한 과세 _스테이킹, 에어드랍, 하드포크

- 대표적 새로운 사건
 - 스테이킹 (Staking)
 - 암호화화폐 지갑에 동결한 가상자산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을 지원 (지분증명 방식)
 - 그 대가로 사전에 정해진 지급 비율에 따라 보상(동종 또는 이종 가상자산) 수령
 - 에어드랍 (Airdrop)
 -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제휴 또는 마케팅 수단으로 동종 또는 이종 가상자산을 사전에 정해진 지급비율에 따라 무상지급
 - 하드포크 (Hardfork)
 -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이 분리되며, 이종 가상자산을 수령
- 현행 과세규정
 - 구체적인 명시 없음.
 - 단,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2022. 7. 25.)
 - ✓ 스테이킹, 에어드랍, 하드포크 등 무상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 다만,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에어드랍을 경품,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2018-2021 과세연도 대상)

4. 새로운 사건에 대한 과세 _스테이킹, 에어드랍, 하드포크

- 해외사례

- 스테이킹: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는 수령시점의 공정시장가치. 사업성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
- 에어드랍:
 - 미국, 영국, 일본: 수령시점의 공정시장가치를 경상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
 - 독일 및 싱가포르: 수령 시점에 과세X
- 하드포크:
 - 미국: 수령시점의 공정시장가치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 (비교: 소프트포크 과세X)
 - 영국, 일본, 캐나다 : 수령시 과세X. 단, 추후 처분시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자본이득으로 과세
 - 독일 및 싱가포르: 과세X

- 쟁점사항

- 과세여부, 과세시기, 소득구분, 과세가액, 관련비용 공제 여부, 추후 처분 시 취득원가를 이 불분명한 상황으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명확한 제시 필요
- 무상취득의 경우 유동성, 공정가액 산정, 가격하락에 따른 자본손실 발생 가능성, 소액일 경우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등의 이슈가 있음
- 과세방안
 - 스테이킹: 채굴의 경우와 같이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사업성이 없는 경우 효율성을 고려하여 처분시점에 과세
 - 미국 역시 블록체인 거래 검증(채굴, 스테이킹 등) 대가에 대한 과세 이연하자는 법안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 에어드랍: 사은품(과세X)과 경품(과세o)을 구분해야 하는 이슈. 경품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할지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지 명확한 제시 필요. 과세여부에 따라 추후 양도시 취득원가로 보는 금액을 명확히 제시.
 - 하드포크: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분리된 이중 가상자산의 경우 시장가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슈. 수령시점 대신 처분시점 과세가 적정.

5. 세액계산 _취득가액

- 취득가액
 - 현행 규정
 - Max[취득가액, 도입 직전 연도 12.31 가격]
 - 취득가액 산정 시 세액계산 편의를 위해 원가흐름의 가정 허용. 단, 구입시장 구분 별로 구분 적용 (예: 이동평균법(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 선입선출법(그 외))
 - 기타 사건(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랍, 하드포크 등)에 대해 명시 규정 없음
 - 쟁점사항
 - (1)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
 - 장기 보유(1년 이상) 시 대체 취득가액으로 도입 직전 연도 말 가격 대신 매월 말 평균가격 적용을 고려
 - (2) 구매시장에 따라 취득원가 구분 산정 방법: 실무 적용상 복잡하며, 해외 유사사례 없음
 - 원가흐름의 가정을 허용하는 것은 수량이 많고 구입가격이 다양한 동일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이에 맞게 시장 구분 없이 적용.
 - (3) 기타 사건에 대한 취득원가 규정. 과세형평 및 해외 사례를 참고.
 - 수령시점에 과세한 경우: 취득가액 = 수령시점 과세가액
 - 수령시점에 과세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 = 0. 과세이연 효과.

5. 세액계산 _공제액

- 공제액
 - 현행 규정: 250만원.
 - 해외사례:
 - 미국: 총자본이익(가상자산 포함)에 대해 \$44,625 공제
 - 영국: 총 자본이익(가상자산 포함)에 대해 공제. 공제금액은 £12,700→£6,000→£3,000로 인하
 - 일본: 가상자산 관련 전체 소득에 대해 JPY 200,000 공제
 - 독일: 가상자산 단기 자본이익에 대해 600유로, 기타사건 소득에 대해 256유로
 - 싱가포르: 가상자산 관련 기타사건 소득에 대해 SGD 300
 - 쟁점사항:
 - 금투세 5000만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음. 자원배분의 왜곡 초래할 가능성. 거래소 밖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
 - 가상자산시장 안정화 및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 초기 공제금액을 금투세 수준으로 높인 후 낮춰가는 방안을 고려

5. 세액계산 _세율

- 세율

- 현행 규정: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2%로 분리과세
- 해외사례:
 - 일본: 소득 구분 없이 잡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종합과세 (15% ~55% (지방소득세 10% 포함)).
 - 미국: 장기 자본이득은 분리과세 (0, 15, 20%), 단기 자본이득 및 렌딩 대가는 종합과세 (10~37%)
 - 영국: 자본이득은 분리과세 (10%, 20%), 렌딩 대가는 종합과세 (0%~45%)
 - 독일: 장기 자본이득은 비과세, 단기 자본이득 및 렌딩 대가는 종합과세 (0~ 45%)
 - 싱가포르: 장기 자본이득은 비과세, 렌딩 대가는 소득세 종합과세 (0~24%)
- 쟁점사항:
 - 1) 22% 단일세율은 공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 고소득 투자자(한계세율이 22% 초과)에게는 유리한 반면, 저소득 투자자(한계세율이 22% 미만)에게는 불리
 - 방안1) 납세자에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도록 하여 저세율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 방안2) 양도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세율 차별적 적용 (미국, 영국 사례)
 - 2) 장기보유 시 혜택 부여해 장기 투자문화 조성
 - 미국, 독일, 싱가포르는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 저율 또는 비과세 혜택.
 - 장기 투자소득 소득금액에 따라 경감세율 적용 고려

5. 세액계산 _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

-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
 - 현행 규정: 가상자산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X. 이월공제X
 - 해외사례
 - 미국 및 영국: 가상자산 자본손실은 다른 자산의 자본이익과 통산 가능.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 가능
 - 단, 미국의 경우 조세회피 방지 위해 wash sale provision을 운영. 동일한 투자자산을 30일 이내에 재구매 하는 경우 자본손실 이월공제 불가.
 - 일본: 가상자산 결손금의 다른 소득과 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X.
 - 쟁점사항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손실이 있으면 차감해줘야
 - 미국 및 영국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 일본에서는 현재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도입 논의 있음
 -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
 -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도 이월공제 도입 고려.
 - 이는 장기투자를 장려 및 건전한 투자문화 구성에 필요
 - 또한,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가상자산 소득과 금융투자소득간의 손익통산 가능성 검토

6. 납세협력 _신고 및 납부

- 현행규정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모든 납세자의 거래정보를 작성 및 제출. 원천징수 의무는 없음
 -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
- 해외사례 _미국
 -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상세 내역을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요구
 - 암호화폐 전용 세무 소프트웨어(crypto-specific tax software) 활용
 - 암호화폐 거래소에 연결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IRS Form 8949를 생성 (예: Koinly)
 -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Schedule D 및 Form 8949를 첨부하여 제출
 -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정보 작성 및 제출의무, 원천징수 의무X.
 - 단, 납세자식별번호(TIN)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 예비적으로 원천징수 한다는 규정.
- 제안사항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정보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협력의무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보다는 세액공제 등 과세행정 협력에 대한 지원방식의 접근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하는 방안
 -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세율은 단일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 가능하므로 원천징수로 효율성 제고
 -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은 납세자가 쪼개서 신청하도록 설계
 - 가상자산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익통산을 목적으로 직접 신고하도록 설계
 -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 자동채움서비스를 통해 세무신고의 용이성 제고

7. 장기적 과세방향

- 현행
 -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여 과세.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장기적 과세방향:
 -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 & 금투세에 포함하여 과세
 -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있음
 - 가상자산은 성격상 금융자산에 가까움
 -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를 자본이득세 수준으로 정비 &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양도소득세로 일원화 하여 세제 간소화
 - 해외 사례: 주식 양도차익을 금투세로 별도로 분류과세 하지 않고 자본이득으로 과세
 - 보유기간에 따른 차별과세
 - 장기 자본이득: 누진/경감세율, 분리과세 적용. 장기투자 장려.
 - 단기 자본이득: 누진세율 또는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적용
 - 가상자산 소득 중 자본이득 외의 소득은 소득의 성격, 유동성,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세
 - 채굴, 스테이킹, 렌딩은 사업성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 또는 처분시점까지 과세유예
 - 에어드랍 및 하드포크는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처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8. 기타

- 가상자산 과세가 종합소득 기본공제에 미치는 영향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기본 공제대상자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 100만원 기준 판단 시 연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제외),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봄 (소득 46012-371, 2001.2.16)
-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분리과세 적용하므로 종합소득 기본공제에 미치는 영향X.

-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 직장가입자의 월별보험료 산정기준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10,000) + 보수외소득 월액* 보험료 X 보험료율 (709/10,000)
(*) 보수외소득 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x 1/12
(**) 연간 보수외소득 = 비과세소득 제외. 1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될 때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 없음.
- 기타소득이 분리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외소득 월액에 포함된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가상자산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까지 인상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 관련 소득이 배제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상자산 투자활동 관련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